칠레의 중재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ile's Arbitration System

김 상 찬*·김 봉 조** Kim. Sang-Chan·Kim, Bong-Jo

- 목 차

- 1. 머리말
- Ⅱ. 칠레의 중재제도 개요
- Ⅲ.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
- N. 칠레의 대표적 중재사례
- V.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
- Ⅵ. 맺음말

국문초록

칠레는 중남미에 위치한 나라로서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교역하고 있는 남미국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된 이후에 현재까지 양국간 교역량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교역량의 증가는 곧 무역마찰로 인한 분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향후 칠레와의 무역분쟁도 점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상거래 분쟁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재 등 ADR에 의한 해결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

논문접수일 : 2013,03,29 심사완료일 : 2013,05,10 게재확정일 : 2013,05,13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금까지 영어권과 유럽권 국가와의 교역과 교류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페인어 문화권의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은물론 이들 국가에 대한 정보의 부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본고는 칠레의 중재제도의 개관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칠레의 가장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산티아고(Santiago)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의 개요와 함께 칠레의 대표적 중재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칠레의 중재법인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우리나라에 칠레의 중재제도에 관하여 소개되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논문은 칠레의 기업들과 국제거래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국내 기업에게 칠레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향후칠레의 중재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학문적으로도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칠레, 중재, 중재제도, 조정중재센터, 중재사례,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

1. 머리말

칠레는 중남미에 위치한 나라로서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과 남미국가와의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2004년 4월 1일 한국과 칠레의 FTA가 발효된 이후에 2010년 현재 양국간 교역량은 18.5억달러에서 71.7억달러(추정치)로 287%가 증가하였고 대한민국의 대칠레 수출은 5.2억달러에서 29.5억달러(추정치)로 462%, 대칠레 수입은 13.3억달러에서 42.2억달러(추정치)로 218%가 증가하였다.1)

칠레와의 FTA 협정 체결은 대한민국의 FTA 체결의 시발점으로서 많은

¹⁾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한-칠레 FTA 개관", 2011, 1면,

의미를 가지고 있다. FTA 체결이후 급격히 늘어난 교역의 이면에는 국가 간, 국가와 회사 간, 또는 회사 간이나 개인들 간에서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상거래 분쟁에 있어서는 당사자 국가들마다 다른 법체계와 관행들로 인하여 소송을 통해서는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게 되었고, 국제상거래 분쟁에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ADR 제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왔다. 대한민국은 기존에 영어권과 유럽권 국가와의 교역과 교류에 많은 비중을 두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스페인어 문화권의 국가들과의 교류가 일면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칠레와의 FTA가 제일 먼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칠레에 대한 정보 부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교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고는 칠레의 중재제도의 개관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칠레의 가장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산타아고(Santiago)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 대하여 살펴보고, 칠레의 대표적 중재사례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현재 칠레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칠레의 중재제도에 관하여 소개되고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칠레의 인터넷 사이트와 칠레의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중재기관 등 고유명사는 그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스페인어 원어도 같이 표시하고 약자는 최대한 풀어쓰기로 한다.

본고는 칠레의 기업과 국제거래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에게 칠레의 중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며, 향후 칠레의 중재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칠레의 중재제도 개요

1. 전통적 중재제도와 입법연혁

칠레는 1875년에 시대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법원구성법전(Ley Orgánica

de Tribunales) 내에서 하급심에 관한 첫 번째 성문 법전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법전 하에서 중재에 관한 하나의 공식적인 조항을 규정하였다. 즉, 관할권한을 규정하는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중재법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재법원의 정의와 중재법원 법관들의 요건, 임명방법과 더불어 법관들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재의 목적이 될수 있는 것과 될수 없는 것들의 모든 소송에 관한 일반 규정들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을 요청할 때 부양청구권과 관련한 부분들도 중재와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 후 1893년에는 칠레의 중재제도는 칠레의 재판절차법의 일부분으로서 성문화되었다가, 1908년 민사소송법(Código de procedimiento Civil)이 제정되면서 여기에 비로소 본래 의미의 중재법원(Juicio Arbitral)의 통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규정되기에 이르렀다.2)

칠레에서는 오래전부터 변호사출신의 교수들과 뛰어난 법률가들이 사적으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중재분쟁을 해결하는 전통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1992년에 중재센터(Centro Arbitral)의 창설과 함께 Santiago³⁾의 상공회의소(Cámara de Comercio)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도화 되었다. 한편, 칠레의 노동부(Ministerio del Trabajo) 소속하에 공공기관과 회사의 구성원들의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한 중재위원회(Cuerpo Arbitral)가 존재하고 있다.

칠레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복잡성과 재판에서 상소방법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일반사법제도 분야가 완만하게 발전되어 왔는데 이러한 전통이 칠레에서의 중재제도의 발전에는 도움이 되어왔다. 칠레에서는 대부분의 계약에서 중재인들이 임명이 되는데 이러한 중재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대규모의계약불이행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4)

중재센터(Centro Arbitral)의 창설과 함께 1995년에 100여건이었던 중재건수가 1998년에는 500여건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380여건으로 감소하기도

Miguel Luis Amunátegui M., "El Arbitraje en Chile", 'Workshop Arbitraje en la Región, 2002, p.1.

³⁾ Santiago는 칠레의 수도로서 칠레 중재제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Santiago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Centro de Arbitraje y Mediación de la Cámara de Comercio de Santiago)'가 위치하고 있으며, 칠레의 중재관련업무와 지원은 대부분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⁴⁾ Miguel Luis Amunátegui M., supra note 2, p.1.

하였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500여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칠레의 중재제도의 영역

심사숙고해서 나온 여러 가지 재판제도의 대안들 중에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법규들에 잘 따르기 위해서 중재심판관들을 임명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중재법을 제정해서 선포하거나 Santiago 상공회의소(Cámara de Comercio de Santiago)의 권한에 직접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중재심판관들의 임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를 법제화 한다면 소송의 관점에서 공정성, 객관성,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적절한 비용지출 등에서 이점이 있을 것이다.

칠레의 중재제도상 중재의 영역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 가. 건설, 건축계약
- 나, 부동산계약 관련
 - (1) 매매계약. (2) 임차계약
- 다. 보험계약
- (1) 화재보험, (2) 농업분야, (3) 건설재해, (4) 보증금, (5) 공무원 신원 보증, (6) 민사 일반계약책임, (7) 민사 특별계약책임, (8) 어업분야, (9) 자동차, (10) 환전, (11) 해상운임
 - 라 일반 계약불이행
 - (1) 배상금 강제이행, (2) 손해배상결정
 - 마. 법인
 - (1) 주주총회. (2) 합병
 - 바. 유산분할
 - 사. 단체협약에서의 노동관련 사건
 - 아. 광산사건
 - 자. 야채수출

3. 국가 정부와 중재제도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국내 분쟁들에 있어서 국가는 절대로 이러한 분쟁들을 중재제도에 위임하지 않으며, 오직 중재제도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 국가를 위해 양보를 얻어내는 조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공공사업을 위해 제정된 공공개발사업법(Ley de Concesiones de Obras Públicas)을 포함하고 있는 '900법률(El decreto 900 de Obras Públicas)'에서 하나의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은 공공사업개발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중재위원회(Comisión Conciliadora)에 정부와의 분쟁해결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를 받은 중재위원회(Comisión Conciliadora)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권리자와 정부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고중재법원(Tribunal Arbitural Tripartito)에 분쟁을 이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으로인해서 최근 몇 년간 공공사업 중에서 도로개발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된 금액이 수십억 달러 이상을 초과하고 있다.

4. 국제질서 속에서의 중재제도

국제질서 속에서의 중재제도는 크게 국가사법 불체포특권의 문제, 그리고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의 설립 등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국가사법 불체포특권의 문제

1978년 DI.2.349 법령은 국가가 불체포 특권(Inmunidad de Jurisdicción del Estado)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934년 열린 제6차 Americaana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채택된 국제사법(Código de derecho Internacional Privado)에 의거하여, 국제계약시에 외국법원을 따르는 협정들의 유효화를 선언함으로써,

⁵⁾ Miguel Luis Amunátegui M., supra note 2, p.2,

국가 사법 불체포 특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이 법령의 혜택을 받는 국제계약은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기업 또는 기관이 칠레와 맺었거나 또는 맺을 수 있는 계약을 의미한다. DI.2.349법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 경제, 금융 활동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약관을 제정할 때 국제계약이 중재를 포함하여 외국법원의 사법권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세계화의 과정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있어서 중재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세계의 기업들은 외국법원에서 소송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각 나라별로 독특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의 각각의 상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 분쟁지역의 일반법원들에 있어서 마지막 이행지체를 확인하고 그 지역에 중립을지키고 있는 판사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압력을 넣기 시작하고 이러한문제들은 일선 판사들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주게 되었다.6)

각 지역 법원의 판사들의 고민들로 인해서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사중재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중남미 각 나라의 입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5년 아르헨티나, 1995년 과테말라, 1996년 페루, 1997년 볼리비아, 1997년 코스타리카, 1998년 콜롬비아 그리고 가장 최근에 브라질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되었다.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1989년에 일반절차법의 일종으로서 중재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에서는 공적인 중재만큼이나 사적인 중재에 있어서도 중재제도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공적 중재제도에 대한 규정만을 두어서 많은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중남미 각 국가에서 중재제도가 입법화 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국제상사재판소(Corte Internacional de Comercio)와 대학교들을 통해서 다수의 화해중재기관과 중재보조 단체들이 설립되어지

⁶⁾ 이하의 내용은 2000년 11월 27일 제21회 국제상공회의(Cámara Internacional de Comercio) 에서 Santiago의 조정중재센터(Centro de Arbitraje y Mediación)의 회장인 Carlos Eugenio Jorquiera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기 시작하였다.

국가 간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많은 양의 국가 간 또는 각 국가 내에서의 지방사이의 무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쌍방 협정 또는 다국간 협정이 많이 이루어졌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⁷⁾에 적용될 수 있는 브라질리아 의정서에는 외국 투자자들의 보호에 관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Arreglo de Differencias Relativas a Inversiones)는 국제부흥개발은행(Banco Internacional Desarrollo)의 가입국 국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었는데, 1998년에는 남미공동시장 (Mercosur)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함께 여기에 볼리비아와 칠레가 새롭게 참가하여 국제상사중재위원회(Arbitraje Comercial Internacional) 설립에 관한 협정을 맺게 되었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협정은 세계은행(Banco Mundial)의 산하에 국제투자 분쟁조정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Arreglo de Differencias Relativas a Inversiones)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각 법원의 중재사법권(Jurisdicción Arbitural)에 국가가 복종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외 국인 투자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간, 또는 국가와 회사 간의 국제중재 를 담당하고 있다.

칠레는 2000년에 El Clarín⁸⁾의 영업 비밀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미화 5억 달러의 소송을 청구했다. 그리고 Malaya⁹⁾를 거래하는 한 회사는 마찬가지로 칠레정부에 이미 결정된 계획조정지역의 재분할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차례로 칠레의 한 회사는 페루에서 자사의 공장을 폐쇄하도록 결정한 Lucchetti사건¹⁰⁾에서 미화 1억5천만 달러를 페루에 청구했다.

⁷⁾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로 이루어진 남미의 경제 공동체를 말한다.

⁸⁾ 칠레에서만 재배되고 있는 야채 식물로서, 정원에서 재배되는 흰 완두의 변종, 스위트피라고 불리기도 한다.

⁹⁾ 칠레와 페루에서 쓰이는 용어로, 소갈비뼈 위에 있는 살을 의미한다.

¹⁰⁾ 칠레와 페루 양국 간에 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서, 양국의 정치인들까지 연루되면서 사회 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하고 있는 Lucchetti Peru라는 회사는 주로 건설관련 업무를 하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페루에 있었지만 회사의 자본과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면 국제중재재판(Juicios Arbiturales Internacionales)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당사자들이 여러 국가의 회사 또는 개인들일 때 진행되게 되고, 그리고 런던국제중재재판소(London Court of Internacional Arbitration) 또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Comisión Interamericana de Arbitraje Comercial)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일반적으로 제도화되어진 다양한 국제중재법원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칠레에서는 최근 국제상사재판(Corte Internacional de Comercio)의 규정에 따라서 칠레와 독일의 거대 맥주회사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재판이 양당사자들의 화해로 종결이 되어졌다.¹¹⁾

Ⅲ.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

1. 조정중재센터 개요¹²⁾

산타아고 상공회의소(Cámara de Comercio de Santiago) 안에는 기업들 간의 분쟁해결을 위해서 별도의 기관인 조정중재센터(Centro de Arbitraje y Mediación)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조정중재센터에서는 중재 및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으로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경제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법률 전문가 그리고 200명의 심판원과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중재에 있어서 다양한 중재서비스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산타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의 중재제도의 장점은 각각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을 지정하여 중재가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들은 중재인들의 높은 전문성을 통하여 더욱 부각된다. 이 센터에서는 기업과 기업 간, 또는 개인과 기업 간의 세금, 회계, 법률계

경영주는 칠레인 Lucchetti였다(http://es.wikipedia.org/wiki/Caso-Lucchetti).

¹¹⁾ Miguel Luis Amunátegui M., supra note 2, p.3.

¹²⁾ http://www.camsantiago.com/quienes_somos.htm

약서, 파산, 환경, 보험, 건설, 부동산문제, 지적재산권, 해상업무, 관습, 광산, 은행 및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두고 있다.

2006년부터는 증가하고 있는 국제무역 분쟁에 대응하여 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국제무역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국제무역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³⁾

조정중재센터는 산디아고 상공회의소에 의해서 1992년에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칠레의 변호사협회와 무역협회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칠레의 가장 대표적인 중재기관이다. 산티아고 상공회의소는 칠레무역협회의 소관으로서 경제부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기관들과마찬가지로 경제부관할 소관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정중재센터는 칠레 비즈니스와 칠레와 관련된 내용을 외국 모든 커뮤니티에 같이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재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000개 이상의 기업 및 로펌에서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지금까지 1,500건 이상의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1998년에 조정중재센터는 기존의 중재 서비스 활동에 더하여 많은 유능한 중재인들을 합하여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분쟁해결을 시작하였다. 2006년 부터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과 아울러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 19.971'의 발효와 함께 조정중재센터에는 다른 나라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상업 중재에 있어서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조정중재센터는 그동안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많은 분쟁 해결과 결정에 있어서 출판, 학술 활동 등 여러 활동을 통하여 분쟁해결의 여러가지 대안 방법의 제시와 함께 중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수의 프로젝트와활동을 이루어 왔으며 중재와 조정과정에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¹³⁾ http://www.ccs.cl/#[CCS]/html/promocion_negocios_apoyo_gestion/solucion_conflictos.htm

미국의 국제상사중재위원회(Comisión Interamericana de Arbitraje Comercial)의 칠레지부를 맡고 있으며, 현재는 실질적으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열 개 이상의 분쟁해결센터를 통합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 네트워크는 2004년에 "혁신을 위한 파트너"라는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남북 아메리카 개발은행(Banco Interamericano de Desarrollo)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5년에는 'ADR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중남미 국가들의 기업들 간의 분쟁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업들에서의 분쟁의 비용 : 중남미 9개 국가의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판하였다.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는 국제개발은행(Banco Internacional Desarrollo)과 강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은행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통화기금(Fondo Multilateral de Inversiones)을 통해서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 중재와 조정의 혜택을 확대하기위해서 "상사중재와 조정의 서비스 심화와 확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자상거래의 신뢰 및 보안 강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재와 중재의 전자관리를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 국내중재(Arbitraje Nacional)¹⁴⁾

중재제도는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결정을 위임하는 기관에서 중재인을 임명하여, 발생하는 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분쟁해결방법의하나이다.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의 서비스는 속도, 효율성, 법률보안, 기밀성을 제공·보장하고 있다. 기관중재 서비스에 있어서는 중재와 관련된 중재에 적용되는 규정과 함께 투명한 중재비용을 산출하여 관세제도와함께 센터에서 일반사무에 관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중재센터는 개인과 기업 간에 있어서 보험, 건설, 부동산 문제,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계약위반으로 인한 분

¹⁴⁾ http://www.camsantiago.com/arbitraje__nacional.htm

쟁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크게 요구 되어 지고 있다.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서는 원활한 중재를 하기 위해서 센터 내의 약관조항에 해당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조정중 재센터에서 중재를 시작하기 위해서 신청조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3. 국제중재(Arbitraje Internacional)¹⁵⁾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는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진 기준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각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지역 사회와 국가에게 국제 비즈니스와 국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간의 사업에 있어서 복잡한 과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필요한 법적지식을 확실하게 제공하며,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가능한 최단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해결을 하고 있다.

국제중재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중재를 위한 장소, 중재에 적용되는 법, 그리고 언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센터에서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각 분야에 적합한 중재인과 함께 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판정에 있어서는 그 판정결과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부터 칠레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1985)'에 기초하여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에 의해서 국제상사중재를 규제하고 있다.¹⁶⁾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 당사자는 국제 상업 중재의 조항에 의거해서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 중재센터의 중재인에게 위임을 할 수 있다.

나.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서는 비용의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

¹⁵⁾ http://www.camsantiago.com/arbitraje__internacional.htm

¹⁶⁾ 우리나라도 1999.12.31. UNCITRAL모델법을 수용하여 우리 '중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 였다.

하여 중재의 비용을 신속하게 알 수 있다.

다.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서는 국제 중재에 적용되는 절차를 결정하는 국제 상업 중재 규칙을 가지고 있다.

라.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의 윤리위원회의 지원과 사무총장 및 행정 비서에 의해서 행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조정(Mediación)17)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서의 조정은 개인과 국가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고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관계를 보호하면서 법적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빠르고 경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모든 당사자에게 만족할만한 합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당사자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여서 각자의 문제와 분쟁에 있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 이러한 조정은 중재인과 중립적인 전문조정인 들의 도움으로 분쟁 당사자가 직접 협상하는 ADR의한 유형로서 당사자의 의지가 필요한 자발적인 방법의 일종이다.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 소속된 중재인들은 미국 하버드대학의 방법론에 따라 협상 및 중재기술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있다. 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센터의 약관조항을 사용하여야 한다.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에서의 진행은 효율성, 속도, 유연성 및 완벽한 비밀의 개념을 선호하며 센터내의 규정, 소송조항에 포함되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

조정중재센터에서는 중재와 관련된 비용문제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중재에는 적용되는 특별 요금이 존재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 후에 조정의 시작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조정중재센터의 중재를 받겠다는 신 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¹⁷⁾ http://www.camsantiago.com/mediacion.htm

Ⅳ. 칠레의 대표적 중재사례

칠레의 대표적 중재사례로서, 아르헨티나·칠레 국경사건과 Lucchetti사건을 들 수 있다.

1. 아르헨티나·칠레 국경사건

이 사건은 현대식 중재제도가 입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이러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소송외적으로 많은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간의 국경선에 관하여 1902년 영국국왕이 내린 중재판결의 해석과 이행을 둘러싸고 양국 간의 대립이 재연되어 국제중재재판에 의뢰된 사건이다. 1965년 4월 양국은 중재계약을 체결하고 중재재판관이 된 엘리자베스 2세는 맥네어(Lord McNair) 등 3명으로 이루어진 중재재판소를 설립하였다. 판결은 하천이 국경이 되는 경우에는 역사적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주요 수로(水路)가 국경이 된다는 원칙 등이 제시되어 칠레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졌다.180

2. Lucchetti사건

1992년 4월 5일에 페루에서 일어난 쿠데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페루 현법에 의해서 시행된 "연합선거 페루 2000"에서 Lucchetti Perú 회사는 대통령후보자인 알베르토 후지모리에게 3번째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의 집무실에서 미국 달러로 21만3천 달러를 기부했다는 사실이 페루의회의 조사결과 드러나게 되었다. 2001년 페루 의회는 1998년 1월, 당시 Lucchetti Perú 회사의 임원인 Vladimiro Montesinos 와 Gonzalo Menéndezv에게 비디오를 가지고 의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테이프에 의하여 재판이 시작되었고

¹⁸⁾ 아르헨티나·칠레 중재재판소 1966,12,9 판결, 16 RIAA 109.

페루법원의 판사는 테이프에 나타난 사실을 토대로 하여 Lucchetti Perú 회사가 기부한 사실을 이권개입의 한 과정으로 판단하였다.

2005년 12월 1일에 Alejandro Toledo 정부는 칠레자본으로 이루어진 Lucchetti Perú 회사의 임원인 Vladimiro Montesinos에게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부에 사법적인 청탁을 하고 이권에 개입을 한 죄명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2001년 10월에 Andronico Luksic Abaroa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Arreglo de Differencias Relativas a Inversiones)에 항소를 하였으나 결국 2005년에 징역 4년의 결과가 나왔고 그동안에 공장은 폐쇄를 당하였다.

2005년 9월 29일에 열린 구술변론에서 Lucchetti Perú 회사는 페루 법원에 칠레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해 10월에 Andronico Luksic Abaroa는 Lucchetti 사건을 국제인권위원회(Comisió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에 이의 제기하였다. Lucchetti 회사는 공장의 폐쇄에 대한 비용 1억5천만 달러에 이자를 더하여서 보상해줄 것을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Arreglo de Differencias Relativas a Inversiones)에 신청하였다. 2005년 2월에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는 Lucchetti 회사는 페루정부를 상대로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5년 2월 7일 페루 외무장관 José Antonio García Belaúnde는 페루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Lucchetti Perú 회사사건은 첫 번째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중재재판소에서 패한 공식적인 사례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19)

V.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

칠레는 국제중재를 위한 방대한 크기의 법률을 가지고 있는데,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 19.971(NUM. 19.971 SOBRE ARBITRAJE COMERCIAL INTERNACIONAL)'20)이 그것이다. 이 법의 모든 내용을 소개하기에는 그

¹⁹⁾ http://es.wikipedia.org/wiki/Caso_Lucchetti

크기가 너무 크므로, 여기에서는 이 법의 중요 목차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법은 총 8편 3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중재에 필요한 모든 분야를 거의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갗이,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중재법(1885)을 수용하여 2004년에 제정되었다.

제1편 일반조항

제1장 적용 범위

제2장 정의와 해석의 규칙

제3장 서면 통신 접수

제4장 목적물에 대한 권리 포기

제5장 법원의 개입 범위

제6장 법원의 중재기간 동안의 지원 및 감독의 특정 기능

제2편 중재 합의

제7장 정의 및 중재 합의의 형식

제8장 소송이전의 중재합의와 요구

제9장 법원에 의한 중재합의 및 중간평가

제3편 중재재판소의 구성

제10장 중재판사의 수

제11장 중재판사의 임명

제12장 제척사유

제13장 제척절차

제14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실패와 불가능의 경우

제15장 대체 중재인의 선임

제4편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제16장 관할에 대한 규칙의 중재재판소의 권한

제17장 임시조치의 요구에 있어서 중재재판소의 권한

제5편 중재절차의 실시

²⁰⁾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contCd=DT002&th_cd=LW002&content_id= 10502&nt_cd=NT041

제18장 당사자의 평등대우원칙

제19장 절차의 결정

제20장 중재절차의 장소

제21장 중재절차의 개시

제22장 용어

제23장 수요 및 응답

제24장 청문회 및 서면절차

제25장 당사자들의 궐석

제26장 중재재판소에 의해서 임명된 전문가

제27장 증거제시를 위한 법원출석

제6편 절차의 판정 및 종료

제28장 분쟁에 적용되는 규칙

제29장 한명 이상의 중재인이 있을 때 결정 내리기

제30장 거래

제31장 판결의 형태와 내용

제32장 절차의 종료

제33장 수정, 판정 및 추가판정의 해석

제7편 항소

제34장 중재판정에 대한 독점적인 수단에 의한 다른 대안요청

제8편 재판의 인정 및 집행

제35장 인정 및 집행

제36장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사유

Ⅵ. 맺음말

이상으로 칠레의 중재제도의 간략한 개관과 함께, 칠레의 대표적 중재기관 인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의 개요와 주요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 다. 칠레의 대표적인 중재사건인 아르헨티나·칠레국경 사건과 Lucchetti 사 건의 내용과 의미도 살펴보았고, 이어서 칠레의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칠레의 중재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2003년 11월 13일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산티아고 상공회의소 조정중재센터와 중재협정을 체결하였다. 칠레와의 이 협정은 FTA 체결 전에이미 이루어졌으며,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칠레와의 이 협정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 중남미기업체 측과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재장소 지정에 있어서 큰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칠레와 맺은 중재협정의 내용에는 국제중재기관 간의 중재장소 선택에 관한 사항이 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중재기관과의 교류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도 게재 되어 있다.

칠레는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사법체계를 이루었으며 특히 1855년에 제정된 칠레민법은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중남미 국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칠레는 1998년 피노체트의 독재정권이 사실상 붕괴된 이후부터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2004년에 FTA도 체결하였다. 현재는 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중재제도의 대표적 국가로서 미국과 같이 아메리카대륙의 중재기관의 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칠레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쟁들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부터 칠레의 중재제도를 살필 필요가 있으며, 칠레의 중재제도를 통하여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중재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상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중재를 비롯한 ADR 제도로 해결하는 것은 그 비용에 있어서나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임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 여러 국가의 중재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칠레의 중재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에 더욱 많은 연구와 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참고문헌

- 아르헨티나 · 칠레 중재재판소 1966,12,9 판결, 16 RIAA 109
-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한·칠레 FTA 개관", 2011.
- Carlos Eugenio Jorquiera. "El Arbitraje en Suramericano", Cámara Internacional de Comercio, 2000.11.27.
- Miguel Luis Amunátegui M. "El Arbitraje en Chile", Workshop Arbitraje en la Región, 0000
- NUM. 19.971 SOBRE ARBITRAJE COMERCIAL INTERNACIONAL(칠레 의 국제통상 중재에 관한 법률)
- http://world.moleg.go.kr/content/law/list.do?contCd=DT002&th__cd=LW002 &content__id=10502&nt__cd=NT04(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www.camsantiago.com/mediacion.htm
- http://www.camsantiago.com/quienes_somos.htm
- http://www.camsantiago.com/arbitraje_nacional.htm
- http://www.camsantiago.com/arbitraje__internacional.htm
- http://www.ccs.cl/#[CCS]/html/promocion_negocios_apoyo_gestion/solucion_conflictos.htm
- http://es.wikipedia.org/wiki/Caso_Lucchetti

[Abstract]

A Study on Chile's Arbitration System

Kim, Sang-Chan

Professor,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

Kim, Bong-Jo
The Master's Course,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

Chile possesses rich resources as a nation located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is a country that accounts for a part of trades with Korea among nations in South America. Until now after Korea-Chile FTA was effective in April, 2004, trade flows between two nations has increased rapidly. Such an increase of trade flows can lead to a rise of disputes because of trade frictions, so it is expected that trade disputes with Chile will increase gradually.

As is generally know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more than any other areas, the need of settlement by ADR such as arbitration has been on the rise. However, because Korea has focused more on trades and exchanges with English speaking nations and European n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trading with Spanish speaking nations because of relatively inactive trades with those nations as well as lack of information on these nations and cultural differences.

This article aims at introducing overview of Chile's arbitration system. In particular, after examining Chile's typical arbitration cases along with overview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er of Santiago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arbitration center, it explores the law on international commerce arbitration that is a arbitration

of Chile.

In a current situation that there is almost no information in Korea that introduces Chile's arbitration system, this article will help Korean businesses that intend to international trades with Chile businesses by giving them understanding of Chile's arbitration system and will be an academic foundation in studying Chile's arbitration system in the future.

Key words: Chile, arbitration, arbitration system, mediation and arbitration center, arbitration cases, a law on international commerce arbitration

